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[시행 2022. 12. 1.] [소방청고시 제2022-27호, 2022. 12. 1., 타법개정]

소방청(소방산업과), 044-205-7511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비상조명등(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)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, 2, 9,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비상조명등"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으로서 비상전원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하며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것을 포함한다.
- 2. "전용형"이란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을 말한다.
- 3. "겸용형"이란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을 말한다.
- 4. "상용광원"이란 상용전원에 의해 점등되는 광원을 말한다.
- 5. "비상용광원"이란 비상전원에 의해 점등되는 광원을 말한다.
- 6. "광속표준전압"이란 비상전원으로 비상조명등을 켜는데 필요한 축전지의 단자전압을 말한다.
- 7. "방폭형"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.
- 8. "방수형"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.
- 9. "유효점등시간"이란 유효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점등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.

제3조(일반구조)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- 1. 상용전원전압의 110 % 범위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 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.
- 2. 방폭형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가. 한국산업규격
 - 나. 가스관계법령(고압가스안전관리법,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)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
 - 다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
- 3.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4. 외함은 기기내부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전구 및 예비전원 등의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·보수·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. 다만, 방수형 ·방폭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6.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·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7. 사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.<개정 2010. 3. 6.>
- 8.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9.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10.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축전지와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11.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12.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-8 또는 KS C IEC 60227-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,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.
- 13. 전선의 굵기가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.75 mm²이상, 인출선외의 경우에는 단면적이 0.5 mm²이상이어야 한다.
- 14.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mm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15. <삭제>
- 16.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비상조명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.
- 17. 내부의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18.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19.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・점검이 쉬워야 하며,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먼지・습기・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20.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·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,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·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21.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2.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3.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24.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25.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인 것을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가.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할 것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나.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는 1 m이하로 할 것
- 다.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할 것
- 26.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27. 유효점등시간은 20분이상으로 하며 2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다.
- 28.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3. 12.>
 - 가. 비상조명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나.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.
 - 다. 먼지,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라.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,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 한다.
 - 마.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 - 바.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부품의 구조 및 기능) 비상조명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- 1. 스위치
 - 가.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,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.
 - 나. 각 접점이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%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5,000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다. 접점은 최대사용전류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.
 - 2. 표시등
 - 가.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.
 - 나.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3. 전자계전기
 - 가. 접점은 G·S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한다.
 - 나.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, 접점밀봉형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다.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4. 퓨즈 등
 - 가.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,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- 나.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.
- 다.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.
- 5. 변압기
 - 가. 변압기는 KS C 6308(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
 - 나.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.
- 6. 안정기
-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<개정 2010. 3. 6.>
 - 7. 소켓
- 백열전구용 소켓,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3. 6.>
 - 8.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 - 9. 예비전원
 - 가. <삭제, 2018. 3. 12.>
 - 나. <삭제, 2018. 3. 12.>
 - 다. <삭제, 2018. 3. 12.>
 - 라. <삭제, 2018. 3. 12.>
 - 마. <삭제, 2018. 3. 12.>
 - 바. <삭제, 2018. 3. 12.>
 - 사.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(전압, 전류)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.
 - 아.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.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 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.0 V의 상태를,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.75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 지는 단전지당 1.75 V의 상태를 말한다.
 - 자.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,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,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.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차.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-10±2 ℃ 및 50±2 ℃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・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,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-10±2 ℃ 및 50±2 ℃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/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,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・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-10±2 ℃ 및 50±2 ℃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.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

- 0.05C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%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카.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/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,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전 원)** ① 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, 정전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 - ②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.
 - ③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.
- 제5조의2(비상점등 회로의 보호)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상점등 회로로 정격전류의 1.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부터의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.
- 제6조(광원) 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광원이 형광램프 또는 백열전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
 - 1. 광원용 램프를 형광램프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,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등 공인규격품 이어야 한다.<'10. 3. 6 개정>
 - 2. 광원용 램프를 백열전구로 하는 경우에는 2중 코일전구이어야 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백열전구를 병렬로 설치 하여 점등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일코일전구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0. 3. 6.>
- **제7조(외함의 재질)** 비상조명등의 외함(매립형의 경우는 내부회로 보호용함을 말한다) 및 부품 지지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 - 1. 두께 0.5 mm이상의 방청가공된 금속판. 다만, 2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에는 두께 0.7 mm이상, 4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는 두께 1.0 mm이상의 방청 가공된 금속판.
 - 2. 두께 3 mm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
 - 산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두께 3 mm이상의 합성수지로서 80 ℃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것
- 제8조(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 등) 표시면 또는 조사면이 있는 비상조명등의 표시면과 조사면의 재질은 1 mm 이상 (다만, 20 W이상의 형광램프 내장시는 2 mm 이상, 40 W이상의 형광램프 내장시는 3 mm이상)의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, 변질 또는 변색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.
- 제9조(소음시험)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(정격전압 ±20 %인 전압에서 실시한다) 또는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.1 m의 거리에서 40 dB이하이어야 한다.
- 제10조(자동전환장치 등의 작동시험) 비상조명등의 자동전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정격전압의 80 %이하인 범위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.
- 2. 비상조명등에 정격전압의 ±10 %인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점멸기로 전환작동을 반복하여 10회실시하는 시험에서 전환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제10조의2(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) 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가 -10±2 ℃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동안 방 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.
- **제11조(충전장치 및 방전장치시험)** ① 자동충전장치, 시한충전장치 또는 보상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한다.
 - 1. 자동충전장치는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±10 %의 수치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.05 C(C는 전지의 공칭용량의 수치)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과충전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2. 시한충전장치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축전지가 완전충전상태와 그 장치의 설정기간의 ±10 %로서 축전지에 충전하는 경우 과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3. 보상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충전상태에서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±10 %인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② 자동과방전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±10 % 또는 설정기간이 규정된 설정기간의 ±10 %로 되는 경우 축전지가 과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제12조 <삭제 >

- 제13조(광속표준전압시험) 비상조명등의 광속전압은 비상조명등을 기준주위온도 20±5 ℃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하고 즉시 48시간 충전한 후 정격부하에서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등을 켜는 경우 유효점등시간 ×1.25시간 경과후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(설계치)이상이어야 한다.
- 제14조(광속비시험) 비상조명등은 주위온도 20±5 ℃인 상태에서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와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때의 광속의 비율이 광원당 36 %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광속비의 ±20 %범위 이내이어야 한다. 이 경우 비상 전원으로 켜는 등은 광속표준전압에서 안정된 직류전원에 의한다.
- 제15조(조도시험)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비상조명등의 광중심을 통하는 연직선에서 바닥면 수평거리가 제품에 표시된 배광번호에 따라 별표1에 표시하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. 이 경우 비상용 광원이 백열램프인 경우에는 별표1중 수평면조도 0.5 lx 및 1.0 lx란을, 형광램프인 경우에는 1.0 lx 및 2.0 lx란을 적용한다.
 - 1. 제품을 규정된 높이(2 m, 3 m, 4 m)에 정상 사용상태로 부착하여 시험한다.
 - 2. 제품을 광속표준전압으로 점등하여 안정시킨 후 측정한다.
 - 3. 제품의 바로 밑에서부터 규정된 조도이상인 수평거리를 측정한다.
- 제16조(반복시험) 비상조명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1만회의 작동을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험도중 광원 및 예비전원은 교체할 수 있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7조(방수시험)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.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(45 ± 2)°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,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.<'10. 3. 6 개정>
- 제18조(절연저항시험) 비상조명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, 절연된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의 외함사이의 각각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MQ이상이어야 한다.
- 제19조(절연내력시험) 비상조명등의 절연내력은 제18조에 규정된 시험부에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(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,000 V,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,000 V를 더한 값)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.
- 제19조의2(전자파적합성) 비상조명등은 「전파법」제47조의3제1항 및 「전파법 시행령」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 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에 적합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 3. 12.>
- 제20조(표시 및 취급설명서) ① 비상조명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.
 - 1. 종별 및 형식
 - 2. 형식승인번호
 - 3.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
 - 4.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
 - 5. 정격전압
 - 6. 정격입력전류, 정격입력전력
 - 7.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, 정격용량, 정격전압
 - 8. 적합한 광원의 종류와 크기
 - 9. 설계광속표준전압 및 설계광속비
 - 10. 배광번호 및 해당배광번호표
 - 11. 그 밖의 주의사항
 - 12. 퓨즈 및 퓨즈호울더 부근에는 정격전류
 - 13. 방수형인 것은 "방수형"이라는 문자 별도표시
 - 14. 유효점등시간(설계치)
 - 15.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(보증기간, 보증내용, A/S방법, 자체검사필증 등)
 - 16. 방폭형인 것은 "방폭형"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및 방폭등급
 - ② 비상조명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의 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제품의 특징
 - 2. 설치방법

- 3. 점검요령
- 4. 배선도 및 결선도
- 5. 사용상의 주의
- 6. 그 밖의 필요사항

제21조(세부규정)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.<개정 2015. 1. 6.>

제22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17., 2018. 3. 12.>

부칙 <제2022-27호,2022.12.1.>

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